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20

발의연월일: 2022. 12. 20.

발 의 자:정태호·고용진·김의겸

김태년 • 설 훈 • 이용빈

이정문 • 이학영 • 홍기원

홍성국 · 홍영표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그 외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고,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는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모든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지속적인 연구·인력 개발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코스닥상장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중견기업이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율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나목 단서 중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을 "중견 기업으로 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5
- 3)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

제10조제1항제2호가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5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가)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목 3) 중 "100분의 8"을 "100분의 1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	세액공제) ①
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1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	

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 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 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 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생략)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u><신 설></u>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가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
2-12 -16 (661) 1 6-
당하는 경우: 100분의 25
당하는 경우: 100분의 25 3)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 그 밖의 경우: 100분의 <u>20</u>
3)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 그 밖의 경우: 100분의 <u>20</u>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 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 로 한다.

2. 연구·인력개발비 중 국가안 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 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 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 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 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생 략)

<신 설>

,
<u>중견기업</u>
_
2
가
1) (현행과 같음)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u>경우: 100분의 35</u>

<u>2)</u> (생 략) 나. (생 략)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 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 의 연구 · 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 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가 발생하 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 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 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 인력개발 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 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 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생략)

	<u>3)</u> (현행 2)와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가. (현행과 같음)
	나

- 1) (생략)
-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 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100분의 10
-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 <u>100분의</u> <u>8</u>
- 4) (생략)
- ② ~ ⑥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フト)
100H al 00
<u>100분의 20</u>
나)
100분의 15
3)
<u>100분</u>
<u>의 13</u>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